

濟州道民의 전통적 法觀念

徐 庚 林*

目 次

- I. 序
- II. 濟州道民의 法意識
- III. 濟州 巫俗神話에서 본 法觀念
 1. 關聯神話와 法觀念
 2. 저승법의 내용과 法觀念
- IV. 結 語

I. 序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는 法治主義의 실현이 요망되고 있다. 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존중되고 대접받는 사회야말로 참다운 法治社會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法이 지배하는 사회는 분쟁을 적절하게 소화하면서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 法은 그 사회의 생활조건과 가치기준의 반영이므로, 立法者의 의지보다는 현실을 질서지우는 規範力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법의 규범력이 약해지고, 사실적인 것에 실효성을 인정하려는 풍토가 만연될 때, 法治主義의 정착은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¹⁾

오늘날 국가사회의 작동장치로서의 수많은 法制度는 일정한 立法節次를 통해서 제정되지만, 이 법제도가 담고 있는 정당한 사회적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受範者인 사회구성원의 공통적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法治主義의 원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法이 지니고 있는 合法性과 正當性이라는 조건과 함께 그 法을 지키고자 하는 사회구성원간의 합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法意識은 결국 法制度가 지니는 합법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게 하려는 의욕 내지 정신

* 濟州大學校 法學科 教授

1) 한국법제연구원, 「94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1994, 13면.

이며 힘인 것이다. 법의식은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하나의 좌표이다. 따라서 법치주의 원리의 정착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국민의 법의식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서 비롯한다. 법의식의 현재의 正體와 변화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다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立法 및 法執行의 방향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法意識은 法制度와는 달리 쉽게 변하지 않고, 사회변동에 따라 형성되어 가는 특성을 갖는다. 법제도는 근대화의 요구에 따라 쉽게 바꾸어 질 수 있으나, 법의식까지 덩달아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제도와 법의식간의 괴리는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바로 이 점에서 法意識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 조사를 통하여 법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法意識이라는 개념은 多義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法感情·法觀念·法文化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法意識과 동일하게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나누어져 있다.

이들 개념을 엄밀히 분별하여 사용하는 것도 법이론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兩者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法意識의 순간순간마다 法感情이나 法觀念, 그리고 法文化의 作用이 침투하는 것이므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法意識은 國家法인 實定法에 대하여 현재 국민이 품고 있는 인지적·평가적·정서적 심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위주로 한 사회조사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法意識이라는 개념은 주로 實定法을 대상으로 하여 의식 상태를 고찰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과거에 先人들의 法에 대한 觀念은 사회조사를 통하여 이를 알 수는 없고, 法概念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法觀念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대상이 法體系 전반, 나아가서 '法' 이라고 불렀던 社會規範 내지 習俗規範까지 포함하여 고찰대상으로 하게 된다.

오늘날 법치주의의 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인간공동생활의 전제가 되는 정의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國家權力을 제한하는 원리로서 강조된다. '합법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lex)'과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法(jus)'을 조화하는 것이 오늘날 법치주의의 핵심과제이다.²⁾

正當性과 合法性을 지니면서, 人權을 보장하고 國家權力을 제한하는 원리로서의 법치주의의 定着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法意識을 올바르게 파악함은 물론, 전통적인 法觀念까지 거슬러 올라가 法治主義에 맞는 요소를 찾아내어 이것을 현재의 法制度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한국법제연구원, 상계서, 19면.

II. 濟州道民의 法意識

1998년 8월에 실시한 '제주도민의 法意識'조사에 의하면,³⁾ 제주도민들은 法에 대하여 상당한 不信을 나타내고 있다.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편파적'으로, 도민의 과반수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법이라는 말이 法令은 물론 法執行機關까지 연상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法治主義에 대한 회의적인 징후로서 그 원인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法에 대한 不信은 法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脫法行爲者에 대한 비난도가 낮으며, 法을 자발적으로 지키기보다 法網에 걸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응답자의 64.5%가 몰인정하다거나(31.5%), 불쾌하다(33%)고 대답하여, 국민의 소송회피 문화가 제주도민의 의식에도 깊숙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法에 호소하는 것을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대체로 법을 어기고도 잘 산다'는 말에 동의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82.7%가 이를 긍정하고 있다. 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탈법할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로 탈법행위를 하여도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도민 대다수가 우리 사회는 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서는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35.6%)', '法이 불공평하므로(25.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준법질서 확립의 일차적 책임이 일반국민의 법의식보다는 법집행자 및 기업인에게 찾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사회의 준법질서를 깨뜨리는 주요집단으로 정치인(45.6%), 기업인(22.5%), 공무원(13.3%), 법조인(11.2%) 순으로 선택한 것은 이의 표현이다.

司法權의 獨立과 관련하여, 勸力이나 財力이 裁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5.9%로 나타나고 있다. 도민의 거의 모두가 권력이나 재력이 개재되면, 재판은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懷疑는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대 다수(77.2%)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론에 의해 재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그 기능의 공정성을 위하여 우려할만한 일이지만, 우리의 경우 오히려 여론이 권력이나 재력의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는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과 같은 法意識 아래서는 법이란 오로지 治者의 도구에 불과하고, 또 법치주의는

3) 徐庚林 外, 「濟州道民의 法意識(법의식에 관한 국제세미나)」, 1999. 6. 1-29면.

법집행자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 인권을 존중하고, 國家權力을 제한하는 차원에서의 法治主義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社會正義는 사라지고, 法執行者는 사회질서를 위해 더욱 法萬能主義에 빠지고, 受範者는 法不信으로 法網에 걸려들지 않기만을 고대하게 된다. 違法精神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도민의 준법정신은 오히려 다른 데서 유추할 수 있다. '귀하가 나가시는 친목회나 친목계 등의 모임에서 會則이나 約束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는 대답이 62.3%이며, 못 지키는 경우에도 그 주된 이유가 생활이 바쁘다는 사유를 들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私的 團體인 친목계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會則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契는 平等을 至上原理로 삼고, 개인의 이기적인 利益追求나 발언력이나 개인적 사정을 엄하게 제약하는 契約觀念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다. 상부상조를 목표로 契員의 權利義務關係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契가 잘 지켜지는 이유는 契員이 회비납부 등 의무를 이행하면, 이에 상응하여 권리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지도력에 의하여 친목계가 좌우되는 경우는 없다. 義務를 다하지 않으면 權利도 주장할 수 없는 自治의 원리가 이 속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의 전통적인 自治組織인 洞契나 洞喪契 등도 마을을 틀로 하고, 自律的인 契組織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역시 契 원리를 따르고 있어, 특정 개인의 지도력에 좌우되지 않는 집단지도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규제가 수평적인 민주적 통로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농민사회는 민주적인 연대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고, 최말단 下部單位인 洞, 里의 운영에 있어서도 上層 勸力의 支配·收奪에만 부분적으로 간섭을 받고, 나머지 생활은 자주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다.⁴⁾ 그러므로 마을공동체는 이 契를 기반으로 한 自治規範은 잘 遵守해왔으며, 바로 여기에서 준법정신의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法의 내용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法規範力의 좌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답은 '약자보호를 위하여(33%)', '국가통치를 위하여(27.7%)', '분쟁해결을 위하여(16.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자보호를 위하여 법이 필요하는 것은 도민의 소망이라고 해도 좋다. 물론 이러한 희망을 표현하는 쪽은 50대 이상의 고령층(39.4%), 초등학교 졸업자(44.3%), 월소득 4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43.8%)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强者 내지 능력 있는 사람은 요령껏 법망을 잘 빠져나가지만, 弱者는 큰 과오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은 이러한 약자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法은 특히 약자보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좋은 法(良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습

4) 주장현, 「국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5, 65면.

理的이기 위해서는 强者와 弱者, 양쪽이 平等한 관계임을 관념적으로 승인하면서도 그 對立關係에 있어서는 약자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강자 쪽의 힘을 억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權利義務關係를 法으로 규율하고 法을 公平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그것이 社會的 弱者 쪽의 權利를 보장한다는 점, 바로 그것에 있는 것이다. 약자 보호에 대한 觀念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巫俗의 '시왕마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우리 나라에서 '法'이라고 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할 경우의 법에 관한 의미이다. 이 때에는 '禮儀'와 '道理'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法을 명령·강제·처벌과 동일시하여 법의 命令的 성격, 強制的 성격, 處罰的 성격, 反價值的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렇게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法觀念이 支配的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民族學的, 人類學的 자료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우리는 선량한 이웃이나 친구를 표현할 때, '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상투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法이란 분명히 國法인 制定法을 가르킨다.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 法이나 禮이냐에 관한 처방은 다르지만, 법을 刑罰과 동일시한 점은 論語에서 보여준 孔子의 '法'의 이해나 法家人 韓非子나 商鞅의 '法'의 이해에 있어서 공통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서구의 法觀念으로서는 法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란 없으며, 法없는 상태라는 것은 곧 無法, 無政府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法없이 사는 상태가 이상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러한 法이란 타율적이고 가혹한 법으로서 法網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는 의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사람에게 따라서는 法이 명령하기 전에 스스로 道理를 다하여야 하고, 처벌이 두려워서 비로소 행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며, 禮와 같은 유교적 규범을 잘 지키면 이러한 명령이나 처벌이 필요없다고 본다. 刑罰이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형벌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조선조시대의 法觀念을 지배하였다.⁵⁾

우리의 수치문화와 밀접히 관련된 요소로서 「細節보다는 大義」를 따르는 것이 法을 준수하고 法을 집행하는 자의 도리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小人視하는 태도가 농후하다. 細則이나 절차에 얽매이거나 꼼꼼하게 따지는 것을 公生원으로 치부하고, 그 반대의 성향을 大凡한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태도는 산업화·도시화되고, 관료조직을 포함한 거대조직을 가진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法則, 예컨대 道路規則, 衛生規則, 建築規則, 그리고 組織에 필요한 諸規則의 준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귀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5) 최대권, 「법사회학」, 서울대학출판부, 1983, 130면.

듣니까?’라는 질문에 재수가 없다거나(27.7%),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적 처벌은 지나치다(23.3%)라고하여, 경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쪽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細則보다는 大義를 중시하는 一面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의식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농경사회의 유습에 젖어, 産業社會에서 중요시해야 할 규범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細則을 소홀히 하는 태도는 현대산업사회에 부가결한 契約締結에 있어서도 일단 큰 원칙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개의치 않는 성향을 갖는다.

서양에서도 法을 命命으로 보는 法實證主義者들의 주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찍부터 法을 正義나 道德에 관련시켜, 法을 正義의 실현으로 관념하는 태도가 더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正義가 아닌 法, 정당성이 없는 法을 法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뿌리깊은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法을 正義와 관련지워, 法은 옳다는 관념속에서 政治의 목적도 이러한 法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인치가 아닌 法治를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

法을 ‘道德의 最小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법적 강제에 의해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이라는 의미이며, 바로 그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고 떳떳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법의식은 法을 도덕적으로 옳고 떳떳하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관련시키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피해야만 하는 것, 피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을 때에만, 또 수치라는 것을 모르는 자에게만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념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조선 초에는 古法尊重·良法美意·民信民志·不可輕改라는 법률관이 있었고, 이러한 법률관에 입각하여 경국대전같은 성문법전을 편찬하였다. 입법자들의 법률관은 유교사상을 이념으로 하면서 동시에 법치주의의 사상에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성문법전은 관료지배의 법전일 뿐 백성의 권리장전은 아니었다.

법에 道德내지 善을 담아야 한다고 관념하고 있는 것은 제주무속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의 개벽신화를 보면, 대별왕과 소별왕 형제가 이승과 저승을 分治하는 과정에서, 아우인 소별왕은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하고, 형인 대별왕은 저승을 차지하게 된다. 속임수로 이긴 아우는 ‘惡’이요, 양보하여 저승을 차지한 형은 ‘善’이다. 惡으로 차지한 이승이므로 인간사회는 결국 無秩序의 세계가 되고, 善한 형의 저승세계는 질서의 세계가 된다.

‘시왕맛이’에서 구송되고 있는 ‘인간세상 살고 보니 역적도모, 살인, 강도, 不孝한 행동이 많건만, 저승길은 맑고 맑은 능수능장법이로다.’라는 부분은 저승법이 善한 法을 지닌 질서의 세계를 뜻한다.

인간은 저승에서 처벌받지 않으려면, 이승에서 착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약자에 대한 구제 의무, 부모효도, 친족화목, 웃어른 존중, 계약의 형평성, 부부간의 성실의무 등 도덕규범으로 가득 차 있다.

제주의 先人들은 이러한 습속규범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잘 지켜왔음은 속담이나 금기어를 통해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國法인 制定法은 소극적으로 피하여 법망에 걸리지 않으

면 되지만, 이 자치법질서인 습속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따돌림, 상부상조나 協業의 거부, 추방, 명석드리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질서의식 내지 준법 정신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法文化를 살펴, 상황에 맞는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Ⅲ. 濟州 巫俗神話에서 본 法觀念

1. 開闢神話와 法觀念

‘三國遺事’ 등 문헌에는 개벽신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제주도에는 큰 곳의 초감제에서 구송되는 巫歌에 개벽신화가 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⁶⁾

太初에 천지는 혼잡되어 있었다. 그런데, 甲子年, 甲子月, 甲子日, 甲子時에 하늘의 머리가 子方으로 열리고, 乙丑年, 乙丑月, 乙丑日, 乙丑時에 땅의 머리가 丑方으로 열리고, 寅方으로 사람이 태어나 천지가 개벽한다.

그 모습은 천지가 캄캄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던 것이 시루떡의 징처럼 금이 나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이 솟아나 서로 습수되어 만물이 생겨났다.

사방에는 구름이 일고, 그 사이로 별들이 나타난다. 天皇달이 목을 들고, 地皇달이 날개를 치고, 人皇달이 꼬리를 친다. 그 때 먼동이 트고 해가 솟아나 천지가 밝아졌지만, 해와 달이 각각 두 개였다. 그래서 낮에는 온 백성이 더워 죽게 되고, 밤에는 추워서 죽게 될 지경에 이른다.

어느 날, 하늘의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처벌하러 지상에 내려왔다가 총맹부인과 동침하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부인은 쌍둥이 형제를 낳으니, 형은 대별왕, 동생은 소별왕이라고 불렀다.

성장한 형제가 하늘로 올라가 자기들이 천지왕의 아들임을 확인한 후, 천지왕은 형인 대별왕에게 이승을, 동생인 소별왕에게는 저승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욕심이 센 소별왕은

‘형님, 우리 형제가 이승법, 저승법 차지하기 마련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누가 이승법을 차지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형제는 둘 다 이승법을 차지하고 싶었다. 결국 교활한 소별왕은 이승법이 탐이 나서 형에게 수수께끼, 꽃가꾸기 등 경

6)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254-257면.

쟁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이승법을 차지하자고 제안한다. 동생이 속임수로 형을 이겨, 이승을 차지한다.

저승법을 차지하게 된 형이 동생에게 경고한다.

‘동생아, 이승법을 차지하라마는, 인간세계에는 살인, 역적 많으리라. 고문, 도적 많으리라. 남자 자식 십오세가 되면 자기 아내 놔두고, 남의 아내 우러러 보기 많으리라. 여자식도 십오세가 넘어가면, 자기 남편 놔두고 남의 남편 우러러보기 많으리라. 나는 법지법인 저승법을 마련하마. 저승법은 맑고 청량한 법이로다.’⁷⁾

소별왕이 이승에 오고 보니, 이승에는 해도 둘, 달도 둘이 뜨고, 草木 禽獸가 다 말을 하고, 인간세계는 불화·도둑·간음이 성행하고, 사람을 부르면 귀신이 대답하고, 귀신이 부르면 사람이 대답하는 상황이었다.

소별왕은 할 수 없이 형에게 이 무질서를 바로 잡아 주도록 부탁한다. 형은 천근 활에 천근 살을 갖고 해 하나 달 하나씩을 쏘아 없앤다.

松皮가루 닷 말 닷 되를 뿌려 禽獸 草木이 말을 못하게 하고, 귀신과 인간은 저울로 달아 백 근이 넘는 것은 인간으로, 못한 것은 귀신으로 보내어 구별지어 주었다. 이렇게 큰 法(질서)은 바로 잡아 주었지만 작은 법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인간세계에는 불화·도둑·간음 등 죄악은 오늘날에도 생겨나게 된다.

이 神話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 신화는 太初 天地의 혼합에서부터 개벽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혼합은 천지가 암흑 속에 相接하여 한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요, 개벽은 그 天地가 시루떡의 징처럼 금이 생겨 분리됨을 말한다. 따라서 이 신화는 天地分離神話이다.

둘째, 天地分離 당시의 해와 달이 각기 두 개인 天體混沌의 상태를 질서화했다는 것이다. 해 둘, 달 둘의 天體混沌은 백성이 더위와 추위로 못살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대별왕이라는 영웅이 이를 정리하여 天體의 질서를 바로 잡은 것이다.

셋째, 天地分離 이후의 일로서 禽獸 草木의 言語, 귀신과 인간의 無分別, 人間의 社會惡 등 人文事象의 무질서를 정리했다는 이야기다. 동물이나 초목은 말을 할 수 없게 하고, 인간만은 말을 하게 한다. 귀신과 인간은 무게를 척도로 하여 구분 지운다. 이렇게 질서를 잡았지만 인간의 악은 그대로 두어, 지금도 사회악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 개벽신화에서 우리는 제주도 선인들의 法觀念에 대하여 중요한 뜻을 읽을 수 있다. 제주도의 다른 신화에 비해 특히 ‘法’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유의해야 할 일이다. ‘큰 法’, ‘法之法’, ‘작은 法’, ‘저승법’, ‘이승법’ 등이 나타난다.

우선 여기서 이승법을 제외한 다른 법은 모두 ‘큰 法’이다. 자연의 질서, 귀신과 인간의 구별, 그리고 저승법은 큰 法으로서 法之法이다. 특히 저승법은 ‘맑고 淸朗한’ 法이다. 한편,

7)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42면.

인간세계의 법인 이승법은 어떠한 법인가. 신화 속에서는 이승법에 대한 定義는 없지만, 저승법에 대비하여 보면, '濁한' 法임에 틀림없다.

우선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려는 욕심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속임수로 이승법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정당성이나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도 良法이 될 수 없고, 법집행도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대별왕은 속임수를 당해 저승법을 차지하면서, 소별왕에게 인간세계의 무질서를 예견한다. 후에 자연질서는 물론 인간질서도 정리하지 못한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이 모두를 질서화하여 줄 것을 간청하지만, 다음과 같은 말로 이를 거절한다.

'그건 못하는 법이다. 하르방 갈 데는 손주가 대신 가도, 손주 갈 데는 하르방이 대신 못한다. 내가 차지한대로 어서 가거라. 내가 큰 法은 가서 다스려 주마. 그 대신 작은 法은 못다스린다.'⁸⁾

대별왕은 인간세계를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저승법을 통하여 저승으로 오게 되는 모든 인간들을 예외없이 다스린다. 인간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승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것은 요령껏 피할 수 있지만, 맑고 맑은 저승법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다. 저승법은 인간들의 사후세계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2. 저승법의 내용과 法觀念

인간들이 살아 있을 때 '공들여' 지켜야 하는 맑고 맑은 저승법은 '시왕맞이'의 '혜심곡'에서 찾게 된다. 시왕은 사람의 생명과 死後에 저승에서 각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다. 시왕맞이는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하는 저승세계에 있는 신들을 모시고 행하는 제의이다.

시왕맞이에서는 「방광침」이 행해지고 나서 「혜심곡」이 口誦되고 있다. 방광침은 死後로 하여금 저승에 가서 새롭게 잘 살 수 있게 빌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왕맞이의 앞부분에서 죽은 자를 위해 베풀어지는 의례이다. 혜심곡은 죽은 자가 가야 할 저승세계의 여러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저승사자가 옆에 당도하는 순간 죽게 되며, 그를 따라 멀고 먼 저승길을 걸어, 마침내 저승문에 도착하여, 자기가 태어난 생감에 해당되는 지옥부터 시작하여 열지옥을 돈다. 지옥에 있는 시왕은 전부 열네명이며, 마지막 열다섯번째는 동자판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저승에 있는 중요한 신은 전부 열다섯 신이 되는 셈이다. 이들 시왕의 이름과 그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제1 진광대왕- 제 10전륜대왕
- ② 제11 지장대왕
- ③ 제12 생불대왕

8)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民俗苑, 1990, 235면.

④ 제13·14 좌도대왕·우도대왕

⑤ 제 15 동자판관

이들이 하는 직능은 다음과 같이 구별되어 있다.

①의 시왕들은 대체로 이승에서 지은 죄를 다스리는 일을 따져 벌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②의 대왕은 내용이 소멸되어 나타나 있지 않다.

③의 대왕이 하는 일은 열 다섯 살 이전에 죽은 아이들만 따로 맡는 신이라 한다. 그는 이 들을 서천꽃밭으로 보내 이승으로 다시 환생시킨다.

④ 이들 두 대왕은 문서를 담당한다.

각 지옥에는 그 곳을 관장하는 대왕의 주관하에 사람이 전생에서 지은 죄목에 따라 재판한다.

다음은 玄容駿의 '濟州島 巫俗資料事典'에서 저승법에 관련된 부분만을 방언을 피하면서, 巫覡이 구송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기술하고자 한다.⁹⁾

인간세상 살고 보니, 역적도모·살인·강도·불효한 행동이 많건만, 저승길은 맑고 맑은 능수능장법이로다---첫번째 올라 진광대왕 가고 보니, 감자·감인·감진·감오·감신·감성, 여섯 생갑(六生甲) 차지로다.

진광대왕 말을 하되,

'너는 인간에서 부모 탄생하여, 깊은 물에 다리 놓아 越川功德하였느냐?'

'그런 바 없습니다.'

'너는 인간에서 배 고픈 사람 밥을 주어, 給食功德하였느냐?'

'그런 바 없습니다.'

칼날 위로 선 다리 타 나가고 발아드는 初地獄이 됩니다.

두 번째 올라 초강대왕 火湯地獄 들어가니

'너는 인간에서 목마른 사람 물을 주어 給水功德하였느냐?'

'그런 바 없습니다?'

'옷 없는 사람 옷을 주어 着服功德 하였느냐?'

'그런 바 없습니다.'

乙生 차지하는 地獄, 끓는 물에 담그면서 罪 마련하는 지옥입니다.

세번째 올라 송제대왕 丙 차지 寒水地獄, 이 지옥을 들어가니까,

'너는 인간에서 부모 孝心하였느냐? 일가친족 화목하고, 洞內尊長하였느냐?'

'그런 바 없습니다.'

얼음 속에 묻어 놓고 죄 마련하는 지옥, 이 지옥을 넘으면 丁生 차지 지옥입니다.

9) 玄容駿, 전계 「濟州島 巫俗資料事典」, 218-225면.

네 번째 올라 오관대왕 劔樹地獄, 이 지옥에 들어가니,
 '너는 인간에서 함정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길막힌 사람 길을 터 주었느냐?'
 '그런 바 없습니다.'

시퍼런 은장도로 살 한 점씩 떨어 놓으며 죄 마련하는 지옥, 이 지옥을 넘어가면 戊 차지 지옥입니다.

다섯번째 염라대왕 拔舌지옥 들어가니, 人間罪가 절로 나와, 염라대왕 말을 하되,
 '너는 인간에서 부모 조상 말 끝에 불손한 대답 하였구나. 일가친척 불목하고, 동네존장 박접하였구나.' 집계를 가져 와 혀를 빼는 지옥이로다. 이 지옥을 지나면, 己 차지 지옥입니다.

여섯 번째 변성대왕, 여기를 들어가니, 너는 인간에서 역적도모 하였구나. 살인·강도·고문·도적질, 못할 일 하였구나'

毒蛇로 몸을 감아 죄 마련하는 지옥, 여기를 지나가면 庚 차지 지옥입니다.

일곱 번째 태산대왕 拒骸地獄 들어가니,

'너도 인간에서 대한길(大路) 가에 앉아서 좋은 금전 받고, 나쁜 음식 주었구나. 되(升) 꿩게 주었구나. 말(斗) 꿩게 주었구나. 남의 눈 속였구나.'

큰 톱, 작은 톱 가져 들어, 열두뼘 커가며, 죄 마련하는 지옥, 여기를 넘어가면 幸 차지 지옥입니다.

여덟번째 평등대왕 鐵床地獄 들어가니,

'너는 인간에서 너의 남편 놔두고 남의 남편 우러러 보았구나. 너의 아내 놔두고 남의 아내 우러러 보았구나.'

철판 위에 올려 앉혀, 밀으로 풀무 붙여 죄 마련하는 지옥, 여기를 넘어가면 壬 차지 지옥입니다.

아홉번째 도시대왕 風塗地獄 들어가니

'너는 인간도리 못하고, 婚姻風德 못하여, 사모관대 만상족도리 혼인식 못하였다.'

남자죄인 항아리 썩워 바람 길에 앉혀놓고, 여자죄인 술을 썩워 바람 길에 앉혀 죄 마련하는 지옥, 여기를 지나면 癸 차지 지옥입니다.

열번째 십전대왕, 밤도 캄캄 낮도 캄캄 黑暗地獄 들어가니,

'너는 인간에서 남녀구별 몰라지고 자식하나 못보았구나.'

흑암지옥에 앉혀놓고 西天꽃밭 올려보내, 아기 업저리들 마련하는 이 지옥을 지나가니,

열하나 지장대왕, . . .

열둘 생불대왕, . . .

열셋 좌두대왕, 심사하여 들어가니, 열넷 우두대왕 文書 만들어 가고, 열다섯 童子判官 문서 거두어 말을 하되,

'너는 인간 살아 罪 많으니 저승에서도 地獄罪를 마련 못할터이니, 귀양살아 또 한번

죽은 후에 와야 저승죄를 마련하리라.'

인간세상으로 귀양 보내되, 牛馬 마소 동물로나, 청구렁이 청지네 흑지네, 萬物草本들이 되어 인간세상으로 귀양보낸후, 인간세상에서 罪없이 功드린 사람에게 동자판관 말을 하되,

'너의 所見대로 말하라. 시왕상마울로 가겠느냐?'

夫人들이 들어오면,

'부인 부인 甘부인 도대부인 守節婦人 烈女婦人 부인되어 가겠느냐? . . . 청나비 흑나비 . . . 나비 몸으로 가겠느냐? 靑새 黑새 몸으로 가겠느냐?'

동자판관 판결대로 죄 없는 인간, 所願대로 가는 법이 되었습니다.

천당이 있다 한들 천당이 어데 있으며, 왕생극낙이 있다 한들 저승에 왕생극낙이 있으리까. 극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세상에 있는 법으로서, 고대광실 높은 집, 南田北畚 넓은 밭, 鑰器財物 좋아지고, 好衣好食하며, 근심 수심없이 사는 게 극낙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 부모 탄생하여, 七十古來稀 팔십이 定命이라고 해도, 잠든 날 잠든 시, 병든 날 병든 시, 근심 수심 다 버려, 단 사오십을 지낼 수 있으리까?

부모 놓아두고 자식가고, 조상 버려두고 자손 가고, 아이 갈 데 어른 가고, 어른 갈 데 아이 가니, 저승길은 거슬러 오르는 물, 거슬러 오르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울며 따르는 아기 버려두고, 가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 길, 산이 막혀 못 오며, 물이 막혀 못 옵니까.

몇 백년 몇 천년 되어도 인간세상 돌아와, 환생 못하는 토란잎에 이슬같은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승길은 아이나 어른이나 거역 못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外人百 內人百 朱門千臣 萬國諸王 諸大臣이나 王의 孫이라도, 양반이나 中人이나 한번 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저승길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주무가의 일반제의인 시왕맞이의 '혜심곡'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巫俗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묘한 모순이 숨어 있다. 한편으로는 불합리하고 흑세무민하는 迷信으로 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民俗傳統으로 보기도 한다.

巫俗이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出產, 結婚, 죽음, 질병의 치유, 근심이나 재난, 사고가 없는 생활, 집안의 평안과 번창, 마을공동체의 안녕 등 인간 삶의 구체적·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祈福的'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른바 기복적인 것은 삶의 정직한 반영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에 부닥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삶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이른바 기복의 동기가 완전히 배제된 종교는 더 이상 종교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哲學이나 思想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무속은 유구한 세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종교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왔으므로, 한국인의 오랜 삶의 모습과 경험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정신세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이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傳統文化를 전승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巫俗을 우리 민족의 고유신앙이라 할 수 있다.¹⁰⁾

위의 시왕맞이에서 본 저승법은 제주도 巫俗의 律法이라고 할 수 있다. 越川功德, 給食功德, 給水功德, 着服功德, 합정에 빠진 사람 구하는 일, 길 막힌 사람 길 터주는 일 등은 이웃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약자 보호를 요구하는 규범이다. 동시에 역적도모, 살인, 강도, 고문, 도적질 등을 금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 속에서는 효도, 일가친족과의 화목, 동네 어른 존중 등이 강조되고 있다. 私的 관계에 있어서는 契約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폭리를 금하고 對價關係를 엄숙히 지켜 去來를 공정하게 할 것을 명하고 있다.

夫婦가 되면, 서로 貞操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여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간통은 물론, 배우자 이외의 이성에 대하여 우러러 사모하는 것까지도 금하고 있다.

제주도의 先人들은 혼인을 風德으로 간주한다. 風德이란 風度와 德行으로서 높고 어진 행실을 가르킨다. 따라서 혼인을 통해서만 인간은 인간도리를 다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男女區別'은 유교에서의 '男女有別'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저승길은 아이나 어른이나 거역할 수 없는 길이다. 王이나 大臣, 양반이나 中人也 거역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러므로 저승법도 이들 모두에게 예외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의 직분에 맞게 공평하게 집행된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동자판관의 존재이다. 동자판관은 死者를 최후로 심판한다. 死者가 열지옥을 거쳐도 이승에서 지은 罪를 다 갚지 못할 때는 이승에 보내, 우마나 구렁이 또는 지네 등으로 환생시킨다.

이승에 살 때 善한 功德을 많이 쌓은 사람은 저승에 있는 좋은 마을인 상마을, 중마을, 하마을, 줄럼당 등 어느 한 마을에서 살게 해 준다. 그러나 원하면 이승에서 새나 나비가 되어 다시 살게 해 준다.

저승에 있는 地獄은 刑罰과 고통의 場이긴 하지만, 死者가 영원히 머무르게 되어 있지는 않다. 이 곳은 이승을 떠난 死者의 영혼이 저승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이승에서 저지른 罪를 씻는다는 '죄씻음'의 의미를 갖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곳을 통과하는 것은 일종의 通過儀禮的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이 때 최후의 심판자가 어른이 아닌 '동자'인 판관인가. 우리는 여기서 제주도의 先인들이 아이에 대하여 특수한 인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罪를 심판하는 자는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불완전한 지식이나 고정관념에 물들지 않은

10) 한국종교연구회, 「종교다시 읽기」, 청년사, 1999, 423면.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뇌물이나 청탁을 받을 상황에 있지도 않다. 이런 면을 중시한다면 인간의 罪의 有無를 판단하고, 진로를 정해주는 일은 어른이 할 수 없다.

어른은 경험된 지식을 통하여 이미 日常에 감염되어 있으므로 심판받을 자의 가리워지지 않은 本來的인 모습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다. 고착화되지 않은, 본질적이고 直觀的인 지혜를 가지고, 일체의 日常성을 부정하는 기반 위에서만 타인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어른보다는 아이가 이런 면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동자를 판관으로 설정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은 제주도 先人들이 가졌던 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순수성과 본질적 측면을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¹⁾

이상과 같이 巫俗의 율법인 저승법의 내용에서 제주 先人들은 저승법은 인간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며, 그것도 순진무구한 동자판관에 의하여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V. 結 語

제주도 민간신앙인 巫俗에 보는 저승법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율법은 도덕 및 법률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율법은 법의 경우와 달리, 平均人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완전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당해 낼 수 없는 정도의 동기의 순수성을 요구한다. 마음속의 간음도 간음이 되고, 때로는 속옷도 벗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저승법은 맑고 청량한 법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法, 곧 이승법은 보통 사람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法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社會秩序를 유지할 수 있기에 족한 정도를 가진 외부적 행위의 準則이 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교상의 율법은 행위의 동기조차 가장 순수한 것을 요구한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의 유지가 그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神의 눈으로 보아 올바른 것이 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키기 힘든 저승법이 제주도의 先人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온전히 지킬 수 없었으므로 死後에 '질침'의 과정을 거쳐야 하였고, 그래도 이승에서의 罪가 다 씻기지 않을 때에는 지네나 구렁이로 환생하여 고통을 당해야 하므로, 저승법이야말로 신앙인들의 생활의 信條요, 價値觀이었다. 그들은 다음의 例처럼 禁忌語나 俗談을 통하여 일상 생활속에서 저승법을 명심하고 있었다.

11) 李秀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39면.

- 0 살았을 때 안 문 빛 죽어서 가더라도 갇아야 한다.
- 0 되 속여서 팔았다가 저승 가면 대꼬챙이로 눈 찢러 채다.
- 0 되 꿇게 주고, 저울눈 속이면, 후손에 줄봉사 낳는다.
- 0 총각으로 늙어 죽어, 저승을 가면, 항아리 씌운다.
- 0 비바리로 늙어 죽어, 저승을 가면, 항아리 씌운다.

저승법은 신이 하강한 공간 속에서 儀式으로 口誦되고, 저승법의 정신이 담겨있는 속담이나 금기어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口承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저승법의 정신은 이조시대나 일제시대에 무속을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저승법이 원래 있어야 할 法の 典型이 아니었을까. 이조시대의 法처럼 법을 刑罰과 동일시하여 법을 피하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弱者를 保護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거래를 공정하게 하며, 부부간의 성실의무를 다하게 하는 저승법이야말로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순진무구한 동자판관과 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면, 준법정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오늘날,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법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법없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법으로 나타나며,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다. 이러한 법이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법의 모습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형성하여 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법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자의 보호와 함께 공동체의 善을 드높이는 법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더불어 살기 위한 “法の 人間化”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 선인들의 法觀念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